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[별지 제59호서식] <개정 2012.1.20>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

	사업장관리번호									
사업장 (수탁훈련기관)	명칭						대표자			
	소재지 (전화번호:)									
지원신청액										
	훈 련	훈련		지원금 내역						
	기관명	과정명 (코드번호)	훈련기간	지원 인원	지원금 총액	훈련비	임금	숙식비	훈련 수당	
지급결정액										
세부 명세										
(사업주용)										
	계									
TI 그런 돼이	사업주명 (사업장	· 과정명	훈련기간	지원금 내역 지원금 흥려비 이그 스시비 훈련						
	관리번호)			시원 인원	시권금 총액	훈련비	임금	숙식비	훈련 수당	
지급결정액 세부 명세										
세구 당세 (수탁훈련기관용)										
(1722/126)										
미지급(일부지급)사유	_									
「고용보험법 시	행규칙」 기	데60조제3힝	에 따라 사업	법주 직 업	겈능력개 빌	한 훈련비용	용의 지급	급결정을		
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										
						_	—	년 월	일	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(○○지역본부ㆍ지사) ^{직인}										
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								

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

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담당자() 전화번호() FAX번호()
-----------------------	---